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125)
----------	-------

제출일자 : 2019. 9. 6

제 출 자 : 달성군



□ 제출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제출사유

-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노후 도시재생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인 화원읍 천내리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본 안건을 마련하여 달성군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함

□ 활성화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대상지는 대구교도소의 장기간 입지 및 주변지역의 성장으로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상권이 침체되면서, 도심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도심공동화 현상 등의 도시문제가 대두됨
- 쇠퇴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개요

- 사업명 : 1,000년의 화원(花園), 다시 꽃피다!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대상지 : 화원읍 천내1,2리 일원(150,000㎡정도) [붙임]참조
- 사업비 : 241.5억 원(국비 115, 시비 57.5, 군비 57.5, 기금 11.5)
- 사업내용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	① 주민 커뮤니티 교류공간 ‘소통’
	② 예술놀이 오픈 캠퍼스 ‘봄꿈’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③ 상상 어울림센터 ‘비상’
	④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골목상권 활성화	⑤ 으뜸상품 판매센터 및 교육장
	⑥ 걷고 싶은 화원 시장길
생활 인프라 개선	⑦ 살기좋은 ‘화원’ 만들기

□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019. 7. 5. : 하반기 사업신청 공고
- 2019. 7. 8. : 용역 보고회 개최
- 2019. 8. 2. : 공모신청서 제출
- 2019. 8. 5. ~ 8. 9. : 서면평가
- 2019. 8. 19. : 현장실사(화원읍사무소)
- 2019. 8. 26. : 주민공청회 개최(화원읍사무소 내 달성군민독서실)
- 2019. 8. 29. : 발표평가(대구시청 별관)
- 2019. 9. 18. ~ 9. 27. : 제274회 임시회 의안상정(달성군의회)
- 2019. 9월 중 : 사업적격성 검증(국토부)
- 2019. 9월 말 : 사업 선정·발표(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2019. ~ 2022.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업선정 시)

붙임

사업계획 구상도

1,000년의 화원(花園), 다시 꽃피대!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을 천내리 일원 / 면적: 약 150,669㎡



대구 교도소 후적지 개발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지역 기재부)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국유지를
문화공원, 교정터온, 도서관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
○ 주변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 연계 추진

부처 협업사업 · 소규모 재생사업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부처협업사업)
 - 지역 고유의 역사 및 문화적 자산, 관광자원으로 도시 활성화
 - 시장 육성을 통한 문화활동 공간인 화원정촌 농산물유통센터 등 조성
- 화원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 (부처협업사업)
 -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 및 화원시장 활성화를 위해 2층 규모 주차장 조성
 - 차량인식시스템, 무인 정산시스템 등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한 시설 도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처협업사업)
 - 입면만 교체, 노후 전신교체, 조명등 교체 등 노후화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 화원, 다시 꽃피길 프로젝트** (부처협업사업)
 -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복지환경 조성
 - 꽃과 음악길, 수목원 가든길 등 꽃을 테마로 한 길로 조성
 - 투어 이정표, 스탬프 거치대 등 배치

D. 생활인프라 개선

- D-1 살기좋은 화원 만들기**
 - 이벤트 광장 및 시민 주차장 조성
 - 인공저수지HOT 기술의 공동 쓰레기 수거시설(MEPHON)로 노년 일자리 창출
 - 안전보행로 및 생활안전 모니터링 운영
- D-2 살고 싶은 화원 시장길**
 - 전통시장 거리 내 보행친화 공간
 - 특색있는 맛집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길
 - 장년 및 마을 사회적 기업의 상생터
 - 무인정보 안내 시스템(Kiosk) 배치

C. 골목상권 활성화

- C-1 으뜸상품 판매센터 및 교육장**
 - 전통시장 내 방문도 활용한 길성군 및 인근지역 특산물 과일 판매소
 - 다양한 행사 및 정보 마케팅, 멘토링 교육 등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
- C-2 걷고 싶은 화원 시장길**
 - 전통시장 거리 내 보행친화 공간
 - 특색있는 맛집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길
 - 장년 및 마을 사회적 기업의 상생터
 - 무인정보 안내 시스템(Kiosk) 배치

B.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 B-1 상생 어울림센터 '비상'**
 - 시민문화발굴단 사무실 및 공방
 - 육아돌봄센터 등 영유아 지원시설
 -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협업공간, 작업 공유공간
- B-2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 노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카페
 - 지역 은퇴자 재취업을 위한 작업공간
 -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 치매상담 및 관리를 위한 치매센터

A.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

- A-1 주민 커뮤니티 교류공간 '소통'**
 - 지역 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류공간(Community room)
 - 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센터
 - 마을 관리조직의 운영을 위한 센터
- A-2 예술놀이 오픈 캠퍼스 '봄꿈'**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커뮤니티 거점
 - 연극, 영어, 요리, 미술 등 다양한 체험이 용이한 형태로 운영되는 예술놀이 캠퍼스
 - 지식 습득을 위한 책 놀이터, 학습공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